

자주 묻는 질문 – 합의

합의란 무엇인가요?

합의는 청문 참석 대신 소환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다음은 필수 조치입니다.

- 감경된 벌금 납부 및/또는
- 위반 사항 시정(정정)(자격 대상인 경우)

케이스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우편으로 합의 제의서를 받은 경우:

- 감경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케이스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합의 제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:

- LegalSettlements@dcwp.nyc.gov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합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. 소환장 번호와 상호를 포함하십시오.

DCWP 는 청문 실시 영업일 기준 최소 1 일 전까지 귀하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수신해야 합니다.

귀하가 합의할 수 있는 경우, DCWP 는 감경된 벌금 금액을 확정하거나 위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[시정 지침](#)을 포함할 것입니다.

제가 합의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행정심판청문사무국(OATH) 청문에 참석해 혐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청문 실시일과 시간은 소환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변호사나 대리인을 청문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.

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요?

청문 실시 영업일 기준 최소 1일 전까지 합의해야 합니다.

합의 제의서 서신에 명시된 감경된 벌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?

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DCWP 는 청문 실시 최소 1 일 전까지 귀하의 납부금을 받아야 합니다.

1. 우편

DCWP 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을 다음 주소로 송부:

DCWP
Attn: Collections Division
42 Broadway
New York, NY 10004

DCWP 가 제공한 반송 봉투를 사용하십시오(해당되는 경우). 수표나 우편환에 소환장 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십시오.

2. 온라인

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보시려면 nyc.gov/dcwp 로 이동하여 For Businesses(비즈니스용) 모듈에서 "[Pay Fines and Fees\(벌금 및 수수료 납부\)](#)"를 클릭하십시오.

Visa, MasterCard, American Express 및 Discover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결제에는 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3. 직접 방문 *1 페이지의 주소지로 예약 방문만 가능*

예약하시려면 Collections@dcwp.nyc.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(212) 436-0259 로 전화해 주십시오. (월~금, 오전 9 시~오후 4 시)

신용카드, 우편환, 수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결제에는 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감경된 벌금을 납부한 후 청문 또는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?

아니요.

감경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귀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더 이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청문 또는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업데이트: 2023 년 6 월